

# 언론과 법

## 언론소송과 판결

### “부모 동의 없이 촬영 댄 신생아도 초상권 침해”

갓 태어나 외모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신생아라도 부모 등의 허락 없이 촬영해 방송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까. 답은 ‘된다’이다.

2005년 9월 KBS 다큐멘터리 ‘병원 24시’ 팀은 신생아 중환자실 생활을 다루는 과정에서 A씨의 남편으로부터 ‘촬영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제작팀은 이 말을 듣지 않은 채 중환자실에 있던 김 군을 간호사가 안는 장면, 김 군이 잠든 장면 등을 촬영해 방송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조용구)는 30일 허락 없이 방송 촬영을 해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엄마 A(31)씨와 아들 김 모(2)군이 방송사와 PD,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총 1,4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나 사회 통념상 특징인으로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찍히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며 “방송사, PD 등이 본인과 친권자의 동의 없이 A씨와 김 군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생아는 외모가 구분안 돼 초상권 인정이 어렵지 않냐는 피고 측 주장이 있었지만 신생아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는 없다”며 “피고들은 A씨와 김 군이 나오는 장면이 매우 짧고, A씨가 묵시적으로 촬영에 동의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2007년 7월 31일

### 인터넷에 실린 과거기사로 피해를 봤다면? 개인 블로그·게시판은 삭제·수정 무풍지대

인터넷에 실린 과거 기사로 피해를 본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본인이 적극적인 의사표명과 수정 요구를 해야 한다. 애초 보도된 것과 달리 상급심이나 최종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언론사에 기사 수정요청을 해야 한다. 기사의 잘못이 명백하거나 보도 이후 달라진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인터넷 상의 수정이나 정정보도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언론사와 당사자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조정신청을 하기 전에 언론중재위의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02-397-3000)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언론사와의 협의를 통해 기사가 수정되거나 정정보도가 나오게 되면 온라인에는 자동으로 반영된다. 언론사와 계약된 포털의 뉴스서비스에도 수정사항이 반영된다. 정정보도는 기사 끄트머리에 정정보도 내

용을 붙이는 게 일반적이다.

블로그와 게시판을 통해 퍼져버린 기사는 언론중재법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복잡하다. 이때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업체의 고객센터를 통해 관련 게시물 삭제와 검색차단, 게시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이슈가 된 사건의 경우 포털 스스로 검색을 차단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기도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반영되기 매우 힘들다. 포털의 한 담당자는 “모든 뉴스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전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가 포털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게시중단 및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이 관리하는 블로그나 게시판의 경우에는 수정·삭제 요구를 하기가 무척 힘들다. 한국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의 김중천 변호사는 “인터넷에 떠도는 기사로 피해가 명백한 상황이라

면 이에 대한 권리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포털을 상대로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권리침해청구권’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사실과 부합하는 과거 기사로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요청한다고 해도 처리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한겨레>는 2006년 시민편집인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독자권익위원회를 열어 내부적 기준을 마련했다. 독자권익위는 “역사적 기록물인 신문기사가 당사자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임의로 수정·삭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최종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경우 △무혐의임이 밝혀진 경우 △오보 △불필요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에는 기사를 수정·삭제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겨레신문 2007년 6월 4일

## 김미화, 동아일보에 정정보도 받아내... “노무현 후보 지지했다니”

방송인 김미화가 동아일보로부터 정정보도를 받아냈다.

동아일보는 27일자 2면에 실린 ‘정정보도문’을 통해 “정치하는 연예인 ‘폴리테이너’를 다룬 7월 6일자 A5면 기사와 관련해 김미화 씨의 2002년 촛불시위 참여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바로잡습니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김씨는 이를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 및 ‘대통령과 인터넷 매체의 대화’ 사회와 연관시킨 데 유감을

표해 왔다”고 덧붙였다.

보도가 나가자 김미화는 지난 10일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당시 동아일보는 “승자 측은 ‘On-Air’ 패자 측은 ‘Off-Air’”라는 기사를 통해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던 연예인들이 방송을 중단한 반면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연예인들은 ‘승승장구’ 한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김미화 씨를 예로 들었다.

김씨 측은 당시 ‘미디어 오늘’과의 언론 인터뷰에서 “김씨가 당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해 김씨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맡는 등 ‘승승장구’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보”라며 “당시 촛불집회는 노사모가 주최한 행사가 아닌 ‘미순이·효순이 사건’ 관련 추모 집회였고, 김 씨 또한 녹색연합 홍보대사 자격으로 참석했을 뿐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2007년 7월 27일

## “‘가짜 북한식품’ 보도, 北서 인정했으면 정당”

북한 무역당국이 ‘무허가 식품’이라고 확인한 북한산 건강식품을 국내 언론이 ‘가짜 북한산 식품’으로 보도한 것은 해당 제품이 진짜인지 여부를 떠나 정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용구 부장판사)는 29일 항암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북한산 건강식품을 중국 총판으로부터 수입해 판매하는 M사가 해당 제품을 ‘가짜 북한산’이라고 보도한 언론사 2곳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직접

북한 당국과 접촉하기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북한 무역성 산하기관이 국내 공기업인 코트라 측에 공식적으로 전송해 준 문건을 근거로 보도를 했으므로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보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영입이 어려워졌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해당 제품이 진짜 북한산인지 여부는 암 환자들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의 보건과 관련된 정당한 관심사항이 되는 만큼 보도의 공익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코트라는 북한으로부터 항암효과가 있

다는 건강식품을 직수입하는 B사와 이와 유사한 식품을 중국 총판을 통해 들여오는 M사의 제품 중 어느 쪽이 진짜 북한산인지를 놓고 인터넷에서 논란이 일자 북한 무역성 산하기관인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에 질의를 했다.

언론사 2곳은 코트라가 민경련으로부터 “M사 제품은 판매허가가 나지 않았으므로 유통하면 안 된다”는 회신을 받아 그 내용을 토대로 “북한이 처음으로 ‘가짜 북한산 제품을 팔면 안 된다’며 판매 금지를 요청해 왔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연합뉴스 2007년 7월 29일

## ‘김훈 중위 사건’ 오보 피해 “시사저널 배상” 판결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일 지난 1998년 판문점에서 일어난 ‘김훈 중위 사망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로 보도된 전 육군 중사 김 모 씨와 가족들이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사저널’ 전 발행사인 예음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7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사에서 원고 김씨의 실

명을 쓰지 않고 ‘김 아무개 중사’로 지칭했으나 당시 사건의 관심사로 비춰볼 때 김씨를 지목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사망 원인을 조사했던 당시 조사단이 김씨에 대해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했던 사실 등에 비추보면 보도 내용은 진실이라 할 수 없고, 이로 인한 김씨와 가족들의 피해는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 지하 병커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당시 부소대장이던 김씨가 1997년부터 야간 경계근무 중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초소에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자 시사저널은 김씨의 북한 병사 접촉과 김 중위의 사망이 관련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1998년 3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김 중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문화일보 2007년 7월 2일자